



공무원 여비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100문 100답



2022. 11.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공무원 여비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100문 100답



2022. 11.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CONTENTS

I 공무원 여비제도 개요



II 항목별 사례



1. 근무지 내 국내 출장

Q&A 1	세종시에서 오송으로 출장 시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12
Q&A 2	출장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12
Q&A 3	서무담당자가 금융업무처리를 위해 근처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12
Q&A 4	운전원이 근무지 내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13
Q&A 5	운전원이 1박2일 일정으로 근무지 외 장소로 차량을 운전한 경우, 출장여비 지급여부는?	13
Q&A 6	오전에 근무지 내 출장을 다녀온 후, 동일한 날에 근무지 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13
Q&A 7	근무지 내 출장 중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만찬이 포함된 경우, 출장여비 지급 방법은?	14
Q&A 8	근무지 내 출장 시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한 경우, 여비 항목에서 해당 차량렌트비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14
Q&A 9	불가피하게 숙박을 해야 하는 근무지 내 출장에 대해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14
Q&A 10	오전 09시~11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 오후 13시~17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은?	15
Q&A 11	하루 동안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여러 차례 간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15
Q&A 12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15
Q&A 13	출장거리 계산시,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거리로 봐야 하는지?	16

2. 근무지 외 국내 출장

가. 운임, 일비

- Q&A 14** 개인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철도승차권(무료 또는 일부 할인)을 구매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 지급 방법은? 18
- Q&A 15** 서울 소재 기관 근무자의 전체 출장일정(5.1~5.15)이 다음과 같을 경우, 총 지급되는 일비는(일부 구간 공적마일리지 사용)? 19
- Q&A 16**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하여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경우 항공운임 산출 방법은? 19
- Q&A 17**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갈 경우에도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19
- Q&A 18** 서울에서 제주도로 출장 시, 보유하고 있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2등석 보너스좌석이 없는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방법은? 20
- Q&A 19** 근무지는 세종청사(세종), 원거주지는 부산인 공무원이 부산으로 출장(1박2일, 월~화)을 가는 경우, 금요일에 원거주지인 부산으로 이동(KTX)하여 집에서 숙박한 후, 화요일에 세종으로 복귀(KTX)한 경우, 운임 등 여비지급 방법은? 20
- Q&A 20** 자가용을 이용한 근무지 외 출장 시 근무지는 세종청사, 출발지는 대전 소재 거주지, 출장 목적지는 부산광역시청인 경우, 자동차 연료비 지급을 위한 거리계산 방법은? 20
- Q&A 21** 자가용을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 지급 방법은? 21
- Q&A 22** 겸직허가를 받아 대학으로 출강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 21
- Q&A 23**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갈 경우, 사전 좌석지정 비용을 항공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21
- Q&A 24** 공무원이 시험감독(감독수당 10만원)을 받을 경우, 운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22
- Q&A 25** 섬 지역으로 근무지 외 출장 시,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 발생한 도선료 지급 방법은? 22
- Q&A 26** 공무상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통행료 및 주차비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22
- Q&A 27** 장애인증을 제시하여 운임에서 할인을 적용받았다면 장애인 혜택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22
- Q&A 28**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대전인 「갑」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구로 출장을 갈 경우, 거주지인 서울에서 직접 출발하는 때의 운임 지급 방법은? 23

CONTENTS

Q&A 29	재택근무 시 업무상 부득이 출장을 가게 될 경우,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23
Q&A 30	서울에서 제주도로 2박3일 출장 시, 출장 첫날 서울 근무지에서 김포 공항까지 공용 차량을 이용한 경우, 첫날 일비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23
Q&A 31	다수의 출장자가 동행하여 근무지 외 출장 시, 개인별로 각출하기로 하고 버스를 임대 하여 이용한 경우, 운임 및 일비 지급 방법은?	24
Q&A 32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연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중간 경유지 또는 출발지에서 결제한 영수증 인정 여부는?	24
Q&A 33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 임차 시 일비 1만원을 감액 하도록 되어있는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에도 일비를 1/2 감액 해야 하는지?	24
Q&A 34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세종시인 공무원이, 근무지인 세종시에서 출발하지 않고 거주지인 서울에서 출발해서 서울 소재 기관인 국회 등에 출장 후 근무지인 세종시로 복귀하는 경우, 여비지급 방법은?	25
Q&A 35	세종시에서 오송역 또는 세종시에서 대전역 구간의 택시비는 운임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25
Q&A 36	서울에서 제주도로 1박2일 출장 시, 항공료(왕복 30만원)와 공무원편상 부득이 제주도 에서 렌트차량 (20만원 소요)을 이용한 경우, 여비지급 방법은?	25
Q&A 37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국내 출장 시에도 항공운임 실비 지급이 가능한지?	26
Q&A 38	출장지에서 연료 충전 후, 발급되는 영수증에 소재지 등 기재되지 않을 경우, 여비 지급을 위한 정찰는?	26

나. 식비

Q&A 39	근무지 외 출장 시 1일 식비(2만원)를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하는지?	27
Q&A 40	근무지 외 출장에서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 지급이 가능한지?	27
Q&A 41	1박2일 근무지 외 출장 중 식사(첫날 점심, 저녁, 다음날 아침)를 제공받은 경우, 식비 지급 방법은?	27
Q&A 42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는 감액토록 되어있는데, 식비와 숙박비도 감액해야 하는지?	28

다. 숙박비

- Q&A 43** 그룹1 “교장(남) 1명, 교사(남) 4명”이 부산광역시 공동숙박(20만원)하고, 그룹2 “교사(여) 5명”이 부산광역시에서 공동숙박(25만원)한 경우에 숙박비 추가 지급액은? 28
- Q&A 44** 자가(自家) 숙박에 배우자의 집도 포함되는지? 29
- Q&A 45** 공무원이 산·학·연 논문심사의 건으로 근무지 외 출장(1박2일)을 다녀온 경우, 해당 주관기관에서 심사비를 지급받았다면, 숙박비(실비 6만원), 일비(2만원×2일), 운임(실비 3만원) 등 여비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29
- Q&A 46** 영 [별표1]의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1박2일 숙박비로 15만원을 지출한 경우, 숙박비 지급액은? 29
- Q&A 47** 근무지 외 출장 시 숙박시설 부족, 성수기 요금 부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숙박비 지급 방법은? 30
- Q&A 48** 공무원이 2박3일의 제주시 출장기간 동안 첫날은 5만2천원, 둘째날은 4만7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지급가능한 숙박비 총액은? 30
- Q&A 49** 국외 출장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할 경우, 항공기 일정상, 부득이하게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30
- Q&A 50** 기상악화 등으로 당초 출장일정을 초과하여 숙박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 30
- Q&A 51** 출장지가 아닌 출장 경로상에 있는 지역에서 숙박을 하였을 경우, 숙박비 지급이 가능한지? 31
- Q&A 52** 2박을 하면서 첫째날에 한 번에 전체 숙박비를 같이 결제하였을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31
- Q&A 53** 영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상 숙박비 실비 상한액이 7만원인 특별시 및 6만원인 광역시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는지? 31
- Q&A 54** 도서, 벽지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현금으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숙박비 지급 방법은? 32
- Q&A 55**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 정액지급이 가능한지? 32
- Q&A 56** 서울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갑」이 3박4일의 부산 출장기간 동안 첫날은 6만원, 둘째날은 8만원을 숙박비로 지출하고, 셋째날은 친지 숙박을 한 경우, 친지 숙박에 대한 정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32

CONTENTS

3. 국외 출장

가. 운임, 경비

- Q&A 57** 국외 출장 시 귀국당일의 일비는 국내 일비와 국외 일비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34**
- Q&A 58** 국외 출장 시 대전근무지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34**
- Q&A 59** 국외 출장지에서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연료비, 통행료, 주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34**
- Q&A 60** 국외 출장 중 차량렌트 비용을 기관차원에서 지원하면 일비는 감액해야 하는지? **34**
- Q&A 61** 일반석 운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과장급 공무원이 국외 항공사,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콤포트 좌석을 이용할 경우, 항공운임 지급은? **35**
- Q&A 62** 국외 출장 시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 승급 대상 및 요건은? **35**
- Q&A 63** 총 4박5일 출장 일정(3.1~3.5)이 다음과 같을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일비 추가지급 방법은? **35**

나. 식비

- Q&A 64** 국외 출장(3박4일) 중 여행 첫날 기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식비를 여행일수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36**
- Q&A 65** 국외여비는 사전에 반드시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는지? **36**
- Q&A 66** 상급자와 동행하여 국외 출장을 갈 경우, 숙박비 또는 식비의 상한액을 모두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36**

다. 숙박비

- Q&A 67** 국외 출장 후 실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호텔 숙박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식비에 대한 정산방법은? **37**
- Q&A 68** 독일로 「갑, 을, 병」 등 3인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갑은 실비상한액을 초과하고 을, 병은 실비상한액 미만인 경우 정산방법은? **37**
- Q&A 69** 영국(파운드貨)과 같이 국외여비 지급단위인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로 공무원 여행을 가는 경우, 여비 정산방법은? **37**

- Q&A 70** 스페인으로 2박 3일간 출장을 갈 때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았는데 현지에서 숙박비가 부족한 경우, 실비 상한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38**
- Q&A 71** 2명이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국외 출장을 갈 때 1명은 숙박비 실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비정산하고, 다른 1명은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또는 프랑스에서는 실비상한액을 적용하고 스페인에서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38**
- Q&A 72** 국외 숙박비 정산 신청 기한은? **38**
- Q&A 73** 부득이하게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 출장을 간 경우, 국외 숙박비 지급 방법은? **38**
- Q&A 74** 국외여비 지급 및 정산시, 환율은 현찰 살 때과 현찰 팔 때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39**

라. 준비금

- Q&A 75** 1개월전 '말레이시아' 로의 국외 출장 시에 준비금을 지급받았는데, '인도네시아' 로의 국외 출장 시 다시 준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39**
- Q&A 76** 여행자보험료도 국외 출장 시 준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39**
- Q&A 77** 지방에 근무하는 관계로 직접 서울 소재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39**

4. 근무지 변경

가. 부임여비

- Q&A 78** 대전 소재 A기관장이 인사발령 신고를 위해 서울로 출장(금요일)을 온 후 다음 월요일자로 부산 소재 B기관장으로 부임(서울자택→부산)한 경우, 출장여비 및 부임여비 지급 방법은? **40**
- Q&A 79** 서울 소재 기관에 신규채용된 「갑」(서울 거주)와 「을」(부산 거주)에 대해 부임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40**
- Q&A 80** 당초 서울의 A기관에서 대전 소재 B기관으로 발령이 난 후 다시 대전 소재 C기관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부임여비 지급방법 및 지급기관은? **41**

CONTENTS

나. 국내 이전비

- Q&A 81** 서울시 소재 'A기관에서 B기관'으로의 인사발령을 계기로, 종전 거주지(또는 주민등록지)인 원주시에서 서울시로 이사한 경우,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42**
- Q&A 82** 전주의 A기관에서 춘천의 B기관으로 인사발령된 경우, 가정형편(배우자 직장, 자녀교육 등)상 실제 이사는 서울로 하고, 인사발령 후에는 춘천 소재 관사, 하숙집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로의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42**
- Q&A 83** 공무원 「을」이 강원도 정선에서 영월로 전보되었으나 태백시로 이전하여 영월로 통근하는 경우,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42**
- Q&A 84** 공무원 「갑」이 총 5톤의 이사화물을 광주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150만원과 사다리차 비용 20만원이 소요되었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43**
- Q&A 85** 공무원 「을」이 7.5톤 규모의 이사화물을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사하면서 총 150만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43**
- Q&A 86** 공무원 「병」이 10톤 규모의 이사화물을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사하면서 총 200만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43**
- Q&A 87** 부산 소재 A기관에서 대구 소재 B기관으로의 인사발령을 계기로 2021년 1월 31일 대구로 이사를 한 후, 2021년 3월 1일자로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2021년 11월 30일에 복직한 경우, 이전비 지급신청기한은? **44**
- Q&A 88** 세종에서 제주로 인사발령으로 인해 이사할 경우, 자가용 이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44**

다. 국외 이전비

- Q&A 89**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귀국하였으나, 실제 이사일은 6월 1일인 경우, 이전비 지급신청기한은? **45**
- Q&A 90** 외국으로 단신부임하는 경우, 이사화물을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는지? **45**
- Q&A 91** 공무원 「갑」이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부임명령을 받아 15㎡ 이사화물을 \$5,000를 지급하고 이전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 이전비는?? **46**
- Q&A 92** 공무원 「을」이 워싱턴에서 베이징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25㎡의 이사화물을 \$7,000를 지급하고 이전한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 이전비는? **46**

라. 국내 가족여비

- Q&A 93 서울(전임지)에서 대전(신임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인근 공주시(거주지)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경우, 동반가족에 대해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47

마. 국외 가족여비

- Q&A 94 뉴욕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귀국하면서, 런던에서 유학중인 20세의 자녀를 한국으로 불러올 경우,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48
- Q&A 95 뉴욕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런던에서 유학하고 있는 20세의 자녀를 근무지로 불러올 경우,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48
- Q&A 96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한 경우 등 일정한 조건하의 재외공무원이 가족동반으로 전지(轉地) 휴양 등을 갈 수 있는 횟수 및 여비 지급액은? 48

5. 기타

- Q&A 97 공무원 「갑」이 허위출장으로 8만원의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경우, 환수조치 방법은? 49
- Q&A 98 외국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출장으로 일시 귀국하였을 경우, 국내에서의 여비 지급 방법은? 49
- Q&A 99 과장급 공무원(제2호)이 국장급(제1호라목) 직위에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무대리 중인 과장급 공무원의 출장여비는 어느 직급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49
- Q&A 100 중앙부처 공무원이 파견명령에 의해 ○○시 보건소로 1개월 파견되었을 경우, 1개월 파견기간을 출장처리·여비지급이 가능한지? 50

I 공무원 여비제도 개요



1. 근거규정 :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예규)

※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 지급하는 사항

2. 여비등급 : 제1호(국장급 이상), 제2호(과장급 이하)

3. 여비항목별 지급액

구분			지급항목	지급방법	지급액
출장	국내 출장	근무지 내 출장	근무지 내 여비	정액	1만원(4시간 미만), 2만원(4시간 이상) * 공용차량 이용 시 1만원 삭감 * 왕복 2km 이하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 지급
		근무지 외 출장	운임	실비	제1호 : 철도 특실, 선박 1등급 제2호 : 철도 일반실, 선박 2등급 * 항공 및 선박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3「국외항공 운임 지급기준」에 따름
			숙박비	실비 (1夜당)	제1호 : 실비 제2호 : 7~5만원(상한범위 내 실비) *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30% 추가지급 가능 * 공동숙박 또는 친지집 등에서 숙박 시 1夜당 2만원
			일비	정액 (1日당)	2만원 * 공용차량 이용 시 1/2삭감
			식비	정액 (1日당)	제1호 : 2.5만원, 제2호 : 2만원
	국외 출장		운임	실비	항공운임 지급기준 : 장관급 이상 1등석, 차관급~국장급 비즈니스석, 과장급 이하 2등석 * 철도, 선박 및 자동차운임은 실비지급
			숙박비	실비 (1夜당)	\$471~\$81 상한범위 내 실비 * 지역, 계급별로 차등 실비지급 *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50% 추가지급 가능
			일비	정액 (1日당)	\$60~\$30 * 계급별로 차등 지급 *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 추가 지급
			식비	정액 (1日당)	\$186~\$37 * 지역, 계급별로 차등 정액지급 *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50% 추가지급 가능
			준비금	실비	국외 출장 시마다 실비로 지급(실비정산) * 비자발급, 예방접종,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 5종
	근무지 변경 (신규임용 포함)		부임여비 가족여비	실비 정액	* (본인) 국내외 여비기준에 따라 지급 (가족) 운임, 준비금은 본인과 같은 등급 일비·식비·숙박비는 12세 이상은 본인의 2/3, 12세 미만은 1/3
			이전비	실비 (화물량)	국내에는 5톤은 실비, 5톤 초과 7.5톤은 실비의 50% 국외는 15㎥은 실비, 16~25㎥(상한)은 실비의 50%



1. 근무지 내 국내 출장

○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의미

- 동일 시·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 왕복 12km 미만인 출장
 - * 단,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지 외 국내 출장으로 처리 가능

○ 여비 지급기준

-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함
- 다만, 출장거리가 왕복 2km 이하인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4시간 미만인 경우 운임 실비, 4시간 이상인 경우 운임 실비 및 식비 1/3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함
 - *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 : 출장비 합산액은 1일 2만원을 넘지 못함 (출장 시마다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1일 1만원을 넘지 못함)
 - * 출장 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 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음
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 시간은 4시간임
- ‘육로-도서’를 연결하는 유료도로 이용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지급 가능

○ 예외적용 대상

- 제외대상 : 전용차량 배정자(장·차관 등),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
 - * 운전원에 대한 근무지 내 지급방법 :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 내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나,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 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 가능. 또한, 근무지 외 출장 시에는 숙박비(실비), 일비(정액), 식비(정액) 지급 가능.
- 1만원 감액 대상 : 공용차량 이용자, 차량임차 사용자
 - * 예) 업무용택시 이용자가 4시간 이상의 근무지 내 출장을 간 경우, 1만원 지급, 4시간 미만의 근무지 내 출장을 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Q&A 1

세종시에서 오송으로 출장 시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일반적으로 근무지와 출장지가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근무지 외 출장을 처리함.
-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택시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음.

※ 사례 : 서울↔과천 간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1-라

Q&A 2

출장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명령이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아울러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여비를 감액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출장명령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라도,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없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Q&A 3

서무담당자가 금융업무처리를 위해 근처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업무와 관련하여 근처 은행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으로 복무처리함.
- 다만, 별도의 실비 발생 가능성이 적은 단순 업무처리이므로, 실제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Q&A 4

운전원이 근무지 내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 다만, 4시간 이상의 근무지 내 출장인 경우(본연의 업무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실비 발생에 따른 여비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 1만원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라

Q&A 5

운전원이 1박2일 일정으로 근무지 외 장소로 차량을 운전한 경우, 출장여비 지급여부는?

- 운전원이라도 근무지 외 출장 시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숙박비(실비, 출장지역에 따라 5~7만원), 일비(정액, 1만원×2일), 식비(정액, 2만원×2일)를 지급함.
- * 공용차량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일비는 1일당 2만원 중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
- 다만, 식비의 경우에 출장특성상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비 부분을 감액하고 지급해야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다, 라

Q&A 6

오전에 근무지 내 출장을 다녀온 후, 동일한 날에 근무지 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각각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출장명령이 성립된 경우, 각각의 출장여비를 지급함.
- 다만, 식비는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 외 출장의 출장 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예시) 09시~13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을 14시~18시까지는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 2만원을 지급하고, 근무지 외 출장 일비 2만원을 지급하되, 근무지 외 출장 식비(2만원)는 근무지 외 출장 시간과 통상적인 식사시간을 고려하여 1식~2식(6,660~13,32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가, Ⅳ-1-나

Q&A 7

근무지 내 출장 중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만찬이 포함된 경우,
출장여비 지급 방법은?

- 식사를 제공받은 것이 명백하여 실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하여 1식에 해당하는 금액(식비 2만원×1/3)을 감액 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Ⅷ-1-가

Q&A 8

근무지 내 출장 시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한 경우,
여비 항목에서 해당 차량렌트비(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차량임차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여비 항목이 아닌 다른 예산항목(임차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함.
- 근무지내 출장 시 여비는 출장 시간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므로, 별도의 운임은 지급하지 않음(단, 임차차량을 이용하였으므로 1만원 감액)
- 다만, 근무지 외 출장 또는 국외 출장 시 별도의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한 경우 해당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발행한 운임(연료비, 통행료, 주차료)은 지급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Q&A 9

불가피하게 숙박을 해야 하는 근무지 내 출장에 대해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근무지 내 출장 시 원칙적으로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숙박비 지급을 할 수 있음.

예시

G20비상근무 경호원에 대한 숙박비 지급

Q&A 10

오전 09시~11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 오후 13시~17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은?

-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1일 최대 2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사례의 경우처럼 오전 1만원, 오후 2만원 산출되더라도 2만원만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나

Q&A 11

하루 동안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여러 차례 간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오전 1회, 오후 2회 등 하루 3회 이상 간 경우]
 -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1일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만원만 지급
-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오전(또는 오후)에만 2회 이상 간 경우]
 - 출장명령을 각각 내지 않고 일괄 출장조치가 가능하므로, 1만원만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나

Q&A 12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 [지급원칙] 도보 출장이 가능한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다만, 부득이하게 실제 출장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서류(영수증 등)를 근거로 실비를 지급함.
- [지급기준]
 - 4시간 미만 : 운임, 1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4시간 이상 : 운임 및 식비, 2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 운임과 식비는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
- [지급예외]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출장기관, 일시, 목적, 실비발생 사유, 증거서류 미구비 사유 등 기재),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마

Q&A 13

당해 출장이 왕복 2km 이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장거리 계산시,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거리로 봐야 하는지?

-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해당여부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최단이동거리로 판단함.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보출장 시 이동거리가 기준이 되지만, 다른 교통수단에 의해 더 단거리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때의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함.
- 또한, 출장거리 계산 시에는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나 인터넷 길찾기 등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하면 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2-마



2. 근무지 외 국내 출장

○ 개념

- 동일 근무지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군·섬으로의 출장이나 여행 거리가 왕복 12km 이상인 출장

○ 여비등급 구분표(영 별표1)

제1호	가목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위원, 대장 등
	나목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차관,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등
	다목	고위공무원 가급, 1급 공무원, 치안정감·소방정감, 소장·준장 등
	라목	고위공무원 나급,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공무원,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정감,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등
제2호		3급이하 공무원(과장급), 교감, 교사 등

○ 여비항목 :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구분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숙박비 (1夜당)	운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국장급이상	2만원	2.5만원	실비	실비(특실)	실비(1등급)	실비	실비
과장급이하	2만원	2만원	실비(한도) * 서울7만원, 광역6만원, 기타5만원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	실비

○ 운임 : 실비정산(영수증 등 증빙에 의한 사후 지급)

- 항공운임 : 좌석 등급별, 여비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국외 출장 동일)

항공운임	구분
1등 정액 (First Class)	영 별표 1의 제1호 가목 해당자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 영 별표 1의 제1호 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임산부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2등 정액 (Economy Class)	1등정액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 좌석 등급이 2개인 경우에는 중간정액 이상자를 상급좌석 대상으로 봄

* 공적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제

- 국내·외 항공기를 이용한 출장 시 공무원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여 보너스항공권 또는 좌석 승급항공권을 확보하여야 함
- 출장자는 보너스항공권 또는 좌석 승급항공권 이용이 불가능한 사유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명하여야 함
-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
- 철도운임 : 특실(국장급 이상), 일반실(과장급 이하)
- 선박운임 : 1등급(국장급 이상), 2등급(과장급 이하)
- 자동차운임 : 실비(버스운임, 철도운임)

○ **일비 : 정액지급**

- 지급기준 : 1일당 2만원 정액
- 일비 추가지급
 -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
- 일비 감액
 - 공용차량 이용 및 별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50% 감액
 - 동일지역 장기체재시 정액대비 1/10~3/10의 비율을 감액 후 지급

○ **숙박비 : 실비정산** (위 표와 같음)

○ **식비 : 정액지급** (위 표와 같음)

가. 운임, 일비

Q&A 14

개인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철도승차권(무료 또는 일부 할인)을 구매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 지급 방법은?

- 공무상 출장 시 운임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철도이용계약을 통해 할인된 요금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보유한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한 것에 대해 운임을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2-가-3)

Q&A 15

서울 소재 기관 근무자의 전체 출장일정(5.1.~5.15.)이 다음과 같을 경우, 총 지급되는 일비는(공적마일리지 사용)?

- 5.1~5.5 부산출장(KTX 이용) / 5.6~5.15 제주출장(항공기 이용)
- 단, 부산→제주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너스항공권(이코노미 16만원 상당) 이용, 제주→서울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사용

- 당초 일비 : 30만원(=2만원×15일)
- 부산→제주구간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이용함에 따라 항공운임(16만원)이 절약되었으므로, 1일당 일비의 50% 추가지급이 가능함. (10만원(2만원×50%×10일)).
- 그러나,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운임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만원(절약된 항공요금 16만원의 50%)만 지급.
- 총 지급 일비 : 38만원(=30만원+8만원)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5-가-1)

Q&A 16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하여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경우 항공운임 산출 방법은?

- 사적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전체 항공마일리지의 30%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절약된 항공운임을 계산하여 항공운임으로 지급 가능.
-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를 50% 추가 지급함(단,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운임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다, 6)

Q&A 17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갈 경우에도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 국내·외 출장을 불문하고 항공기를 이용한 출장 시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해야 함.
- 국내선의 경우, 출장자는 ① 「e-사람」 상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내역, ②보너스항공권 이용 가능 여부(인터넷 예매시 항공마일리지 사용여부 확인)를 확인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
- 만일, 공적 항공마일리지 부족하거나, 항공사 사정(보너스 좌석없음, 좌석 승급 불가)으로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여 항공운임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용불가 안내문, e-사람 마일리지 등)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항공마일리지를 이용(개인 항공마일리지 합산 가능)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지급하되, 추가지급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요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다, IV-5-가

Q&A 18

서울에서 제주도로 출장 시, 보유하고 있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2등석 보너스좌석이 없는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방법은?

- 항공사 사정으로 해당 등급의 좌석인 2등석 보너스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놓고 한 단계 높은 중간석(Business Class) 보너스좌석을 구매할 수 있음.
- 아울러 항공사 사정으로 2등석 보너스좌석이 없어 2등석 대신 중간석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보유한 마일리가 다소 부족하여 중간석 보너스좌석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등석 항공운임 정액을 지급받고 마일리를 사용하여 중간석 좌석으로 승급하는 것도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다

Q&A 19

근무지는 세종청사(세종), 원거주지는 부산인 공무원이 부산으로 출장(1박2일, 월~화)을 가는 경우, 금요일에 원거주지인 부산으로 이동(KTX)하여 집에서 숙박한 후, 화요일에 세종으로 복귀(KTX)한 경우, 운임 등 여비지급 방법은?

- **운임**: 거주여건상 비록 출장일이 아닌 날에 이동하였지만, 출장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당초 출발일(월요일)보다 요금이 할증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할증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숙박비**: 자가 숙박으로 숙박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2-가-2), IV-3-가-1)

Q&A 20

자가용을 이용한 근무지 외 출장 시 근무지는 세종청사, 출발지는 대전 소재 거주지, 출장 목적지는 부산광역시청인 경우, 자동차 연료비 지급을 위한 거리계산 방법은?

- 거리 계산은 근무지와 출장 목적지를 기준으로 도로공사 및 민간(네이버, 카카오내비 등)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함.
- 다만, ‘근무지-출장 목적지’의 거리보다 ‘출발지-출장 목적지’의 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후자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사례의 경우에는 ‘대전↔부산광역시청’을 기준으로 거리 계산을 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I-3-다

Q&A 21

자가용을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 지급 방법은?

-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무지와 출장 목적지 간의 대중교통(버스, 철도) 요금을 지급함.
- 다만, 공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연료비(여행거리×유가÷연비),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자동차 운임(연료비)을 지급할 수 있는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정한 사유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라-2)

Q&A 22

겸직허가를 받아 대학으로 출강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

-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담당직무와 직접 관련없는 외부 강의는 공무상 출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

Q&A 23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갈 경우, 사전 좌석지정 비용을 항공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일반적으로 항공기 이용 시 사전 좌석지정이 공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음.
- 다만, 저가항공 이용 시, 출장자가 이용할 수 있는 항공운임 좌석등급(일반석, 중간석, 일등석) 내에서 사전 좌석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항공운임)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임.

Q&A 24

공무원이 시험감독(감독수당 10만원)을 받을 경우, 운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시험감독업무가 복무상 인정되는 출장이라면, 근무지 내 또는 근무지 외 출장여비를 시험감독 수당과는 별도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Q&A 25

섬 지역으로 근무지 외 출장 시,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 발생한 도선료 지급 방법은?

- 섬 지역으로 공무여행 시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 차량을 선박으로 이동시 발생한 도선료는 운임 지급대상임.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나-2)

Q&A 26

공무상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통행료 및 주차비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 개인차량 이용 시 통행료 및 주차비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므로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라-2)-나)

Q&A 27

장애인증을 제시하여 운임에서 할인을 적용받았다면 장애인 혜택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장애인 혜택으로 할인받은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함.
- 마찬가지로, 개인 철도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실제 지출액이 없거나, 통상 운임에 비해 적게 결제한 경우, 영수증 상 마일리지를 제외한 실제 지출액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2-가-2)

Q&A 28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대전인 「갑」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구로 출장을 갈 경우, 거주지인 서울에서 직접 출발하는 때의 운임 지급 방법은?

-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에서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 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하되, 그 여비는 근무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함.
- 따라서 서울(거주지)에서 대구(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이 대전(근무지)에서 대구(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결국 대전↔대구의 운임(예매사이트에서 금액 확인)을 지급하여야 함.
- 증거서류는 서울↔대구의 운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I-3-다

Q&A 29

재택근무 시 업무상 부득이 출장을 가게 될 경우,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 재택근무 중에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출장을 갈 수 있으며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지급액을 상한으로 함.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

Q&A 30

서울에서 제주도로 2박3일 출장 시, 출장 첫날 서울 근무지에서 김포 공항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첫날 일비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 일비는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개인차량 제외)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출장일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지급함.
- 따라서 서울 근무지에서 김포공항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면 첫날 일비는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해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5-나

Q&A 31

다수의 출장자가 동행하여 근무지 외 출장 시, 개인별로 각출하기로 하고 버스를 임대하여 이용한 경우, 운임 및 일비 지급 방법은?

- 사례의 경우,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개인별로 운임을 각출하기로 하고 차량 공동임대라는 형식만을 빌려 단체로 이동한 것이므로 버스임대 관련 자료를 증거서류로 하여 개인별 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운임은 해당 출장구간 대중교통요금(버스·열차 운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비의 감액 대상은 아님.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라, VIII-1-가

Q&A 32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연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중간 경유지 또는 출발지에서 결제한 영수증 인정 여부는?

- 자가용을 이용하였다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자동차 운임 정산신청을 해야함.
- *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 중간 경유지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출발지에서 결제한 영수증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출장지에서의 주차영수증 등 다른 증거서류로도 인정 가능함.
- 자동차운임으로 대중교통요금(버스·열차 운임) 대신에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통행영수증(하이패스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해당사이트에서 사용내역 출력)과 주차 영수증이 있어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라

Q&A 33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 임차 시 일비 1만원을 감액하도록 되어있는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에도 일비를 1/2 감액 해야 하는지?

- 자가용은,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용 이용 시 일비는 감액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5-나

Q&A 34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세종시인 공무원이, 근무지인 세종시에서 출발하지 않고 거주지인 서울에서 출발해서 서울 소재 기관인 국회 등에 출장 후 근무지인 세종시로 복귀하는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 근무지는 세종시, 출장지는 서울(국회)이므로 근무지 외 출장으로 처리하되, 숙박비(자가 숙박) 및 거주지(서울)에서 출장지(국회)로의 운임은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출장 후 세종시로 복귀하지 않고 거주지인 서울로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무지 내 출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3-다

Q&A 35

세종시에서 오송역 또는 세종시에서 대전역 구간의 택시비는 운임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 오송역(청주시)에서 세종시, 대전역에서 세종시까지의 교통비는 운임(대중교통요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택시는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대중교통(철도 또는 버스)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구간의 택시비는 운임으로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택시를 타는 경우, 당해 구간의 대중교통요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음 (티머니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1, Ⅱ-4-나, Ⅳ-2

Q&A 36

서울에서 제주도로 1박2일 출장 시, 항공료(왕복 30만원)와 공무 형편상 부득이 2일차 제주도에서 렌트차량(20만원 소요)을 이용한 경우, 여비지급 방법은?

- 지급대상: 항공료(30만원), 숙박비(5만원 상한×1박), 일비(총 3만원: 1일차 2만원, 2일차 렌트차량 이용일 1만원), 식비(2만원×2일), 운임(렌트차량 운행시 발생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 렌트차량 임차비는 여비 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음.

[주의] 별도의 예산에서 지원받아 렌트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에 준하여 해당 차량 이용일에 일비 1만원 감액, 개인비용으로 렌트한 경우에는 일비 2만원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1-가, Ⅳ-5-나

Q&A 37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국내 출장 시에도 항공운임 실비 지급이 가능한지?

- 국내 출장 시 항공을 이용한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에 따라 실비 지급이 가능함. 다만,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출장 시에는 기차 또는 고속버스가 일반적인 운송 수단이므로,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 집행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장여건상 항공기 이용이 효율적·효과적인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여 항공운임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저비용항공사 이용이 가능한지 또는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여행시보다 운임이 절감 되는 경우에는 출장여건상 항공기 이용이 효율적·효과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육로 여행시에도 항공기 이용이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다

Q&A 38

출장지에서 전기차 연료 충전 후, 발급되는 영수증에 소재지 등 기재되지 않을 경우, 여비 지급을 위한 절차는?

- 출장지에서 충전 영수증, 고속도로 통행증·출장지 주차요금 등을 통해 자차 이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함.
- 다만, 차량 충전시 발급되는 영수증에 충전소 소재지(출장·경유지)가 기입되지 않은 경우, 회계담당 공무원 등은 충전지 소재지 확인(출장자 또는 단말기 업체 문의 등) 후 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2-가-2

나. 식비

Q&A 39

근무지 외 출장 시 1일 식비(2만원)를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하는지?

- 근무지 외 출장 시 1일 기준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함.
-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 부족, 식비 지출이 예상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출장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식비를 감액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1-나

Q&A 40

근무지 외 출장에서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 지급이 가능한지?

- 근무지 외 출장일 중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예외적으로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함.
- 이 경우, 시간외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는 근무지 외 출장여비로 지급받은 식비(2만원)와 중복되므로 지급하지 않거나, 특근매식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출장여비(식비)를 감액지급.

관련 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기준 VIII-1-가

Q&A 41

1박2일 근무지 외 출장 중 식사(첫날 점심, 저녁, 다음날 아침)를 제공받은 경우, 식비 지급 방법은?

-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식비 지출이 불필요한 것이 명백하므로 감액하여 지급함.
- 사례의 경우, 첫날에는 식비정액분(2만원)의 1/3을 식비로 지급(6,660원)하고, 다음날에 대해서는 식비정액분의 2/3를 식비로 지급(13,330원)하면 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III-1-가

Q&A 42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는 감액토록 되어있는데, 식비와 숙박비도 감액해야 하는지?

- 국내·외 출장 시,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7조에 의해 체재일수에 따라 정액대비 1/10~3/10의 비율을 감액 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식비와 숙박비는 감액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5-다, V-5-나

다. 숙박비

Q&A 43

그룹1 “교장(남) 1명, 교사(남) 4명”이 부산광역시 공동숙박 (20만원)하고, 그룹2 “교사(여) 5명”이 부산광역시에서 공동숙박 (25만원)한 경우에 숙박비 추가 지급액은?

- 2인 이상 공동 숙박시, 총 숙박비를 [1박당 상한액×(출장자수-1)] 이하로 지출한 경우에,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총 출장인원 - (총숙박비 ÷ 8만원)] 범위 내에서 인원수 당 20,000원(1회 기준)을 공동숙박조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1박당 상한액 : 서울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기타 ‘5만원’

* 제1호 해당자와 제2호 해당자가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 ‘8만원’을 기준으로 함

- **[그룹1의 경우]** ① ‘공동숙박 정산 대상’ 인지 확인 : 8만원×(출장자수-1) 이하로 지출 = 32만원 이하로 지출했으므로 공동숙박 정산 대상임

②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 계산 : 총 출장인원 - (총숙박비 ÷ 8만원) = 5명 - (20만원 ÷ 8만원) = 5명 - 2.5명 = 5명 - 3명 = 2명

③ 공동숙박조에 대한 추가 지급액 :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 × 2만원
= 2명 × 2만원 = 4만원 ⇒ 4만원/5명 ⇒ 1인당 8천원 지급

- **[그룹2의 경우]** 총 숙박비(25만원)를 24만원[6만원×(출장자수-1)] 이하로 지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추가 지급 대상이 아님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I-4-다-3)

Q&A 44

자가(自家) 숙박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 자가(自家) 숙박시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음. 자가(自家)에는 배우자의 집도 포함.
- 친척, 친구 집 등에서의 숙박시에는 1夜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친지 집에서 숙박할 경우 관례상 발생할 수 있는 선물비용 등을 감안한 것임.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4-다-3)

Q&A 45

공무원이 산·학·연 논문심사의 건으로 근무지 외 출장(1박2일)을 다녀온 경우, 해당 주관기관에서 심사비를 지급받았다면, 숙박비(실비 6만원), 일비(2만원×2일), 운임(실비 3만원) 등 여비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심사비가 순수 심사비용인 경우에는 별도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심사비에 운임, 식사비, 숙박비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은 제외하고 지급함.
- 사례의 경우, 여비지출 담당자는 해당 주관기관에 심사비 내역을 확인 후 순수 심사에 대한 사례비라면, 숙박비, 일비, 운임 등 총 13만원을 지급할 수 있음.
- 만일 심사비에 운임(2만원이라고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운임을 제외한 후 운임은 1만원만 지급하면 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1, Ⅷ-1-가

Q&A 46

영 [별표1]의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1박2일 숙박비로 15만원을 지출한 경우, 숙박비 지급액은?

- 영 [별표1]의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내부기준(각 부처는 숙박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액 또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이 없는 한, 15만원을 전액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3-가-1)

Q&A 47

근무지 외 출장 시 숙박시설 부족, 성수기 요금 부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비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숙박비 지급 방법은?

-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상한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하나, 그 이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을 해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3-나-3)

Q&A 48

공무원이 2박3일의 제주시 출장기간 동안 첫날은 5만2천원, 둘째날은 4만7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지급가능한 숙박비 총액은?

- 제주시는 숙박비 상한액이 1박당 5만원이므로, 2박에 해당하는 숙박비 상한액은 10만원임.
- 사례의 경우, 10만원 상한액 범위 내 실제 소요된 9만 9천원을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3-가-1)

Q&A 49

국외 출장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할 경우, 항공기 일정상, 부득이하게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 업무 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해야 할 경우, 해당일의 숙박비를 국내 여비로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3-나-2)

Q&A 50

기상악화 등으로 당초 출장일정을 초과하여 숙박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

- 공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함.
- 따라서 부득이하게 출장일정을 초과하여 추가로 숙박을 한 경우에도 실비를 고려하여 숙박비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I-3-나

Q&A 51

출장지가 아닌 출장 경로상에 있는 지역에서 숙박을 하였을 경우, 숙박비 지급이 가능한지?

- 출장지는 아니나 출장경로상의 지역에서 숙박을 하였다면, 출장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 지급이 가능함.
- 다만, 출장지보다 숙박비 실비상한액이 더 높은 지역에서 숙박한 경우라도 출장지를 기준으로 숙박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기관 담당자가 출장수행에 필요한 숙박이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 지급을 제한할 수도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I-4-나

Q&A 52

2박을 하면서 첫째날에 한 번에 전체 숙박비를 같이 결제하였을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 출장일 중 첫째날에 출장기간의 숙박비를 모두 결제하여 증거서류가 첫째날 밖에 없더라도,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결제하여 청구하였다면 결제금액 모두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3-가-1)

Q&A 53

영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상 숙박비 실비 상한액이 7만원인 특별시 및 6만원인 광역시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는지?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숙박비 실비 상한액 5만원에 해당.
- 아울러, 숙박비 상한액이 특별시 및 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 특별시 및 광역시로 출장가서 숙박하는 공무원에 적용됨.
- 또한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상한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3-가

Q&A 54

도서, 벽지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현금으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숙박비 지급 방법은?

- 출장지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인 경우, 간이영수증도 증거서류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에 따른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숙박업소가 간이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는 민박집 등인 경우 숙박업소 주인의 확인증과 출장자의 소명서를 근거로 확인서 상의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I-4-다-1)

Q&A 55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 정액지급이 가능한지?

- 출장업무 수행상 비밀유지가 특별히 필요한 감사업무 담당자의 경우, 지급 대상 범위를 미리 정하여 정액여비를 지급 할 수 있음.

구분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제1호 해당자	정 액	56,000원	20,000원	25,000원
제2호 해당자	정 액	40,000원	20,000원	20,000원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I-4-다-5)

Q&A 56

서울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갑」이 3박4일의 부산 출장기간 동안 첫날은 6만원, 둘째날은 8만원을 숙박비로 지출하고, 셋째날은 친지 숙박을 한 경우, 친지 숙박에 대한 정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근무지 외 출장의 경우 출장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상한액 내 출장 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함.
- 사례의 경우, 3박 4일의 출장이므로 18만원(숙박비, 실비 상한액 6만원×3일) 내에서 실비 정산 가능함. 다만, 출장 첫날과 둘째날의 숙박비 지출 합계액(신용카드 매출전표) 14만원으로 광역시 지역의 2일간 숙박비 상한액 12만원을 초과함으로써, 사실상 3일째에도 숙박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3일 친지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I-4-다-3)

3. 국외 출장

○ 제도 개요

- 개념 : 공무원 출장명령으로 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 여비항목 :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준비금

○ 운임 : 실비

- 철도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 선박 :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좌석 등급별, 여비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

항공운임	구분
1등 정액 (First Class)	• 영 별표 1의 제1호가목 해당자
중간 정액 (Business Class)	• 영 별표 1의 제1호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 상당은 국장급 직위에 있는 자) •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 -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임산부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2등 정액 (Economy Class)	• 1등정액과 중간정액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

* 좌석등급이 2개인 경우에는 중간정액 이상자를 상급좌석 대상으로 봄

○ 일비 : 5개 계급별로 차등 정액지급(30\$~60\$)

- 일비 추가지급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
- 일비 감액
 - 공용차량 이용 및 별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50% 감액
 - 동일지역 장기체재시 정액대비 1/10~3/10의 비율을 감액 후 지급

○ 숙박비 : 4개 지역별(가~라), 5개 계급별로 실비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 식 비 : 4개 지역별(가~라), 5개 계급별로 차등 정액 지급

○ 준비금 :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 예방접종비, 풍토병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 실비지급

가. 운임, 경비

Q&A 57

국외 출장 시 귀국당일의 일비는 국내 일비와 국외 일비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국외 출장 시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외 출장자의 귀국 당일도 공무원 국외 출장기간에 포함되므로 국외 일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5-가-4)

Q&A 58

국외 출장 시 대전근무지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 국외 출장 시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외 출장자의 귀국 당일도 공무원 국외 출장기간에 포함되므로 국외일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국외 출장비 일비에서 당일 공항까지의 국내운임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내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
- 국외여비 실비정산(e-사람시스템)시 해당 국내운임에 대해 추가 정산을 할 수 있음.

*지출예산항목 : 국내여비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I-4-나

Q&A 59

국외 출장지에서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연료비, 통행료, 주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국외에서 공무원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여행거리(km)×여행국가의 ㄹ 당 유류비 ÷ 연비(여비업무 처리기준 “Ⅳ. 2. 라”의 국내자동차 연비)에 따라 산출된 유류비와 통행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2-라-2)

Q&A 60

국외 출장 중 차량렌트 비용을 기관차원에서 지원하면 일비는 감액해야 하는지?

- 일비는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여비가 아닌 예산항목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1/2 지급함.
- 따라서 기관차원에서 지원한 렌트 비용이 있으면 일비는 국내여비와 동일하게 1/2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5-가-4)

Q&A 61

코로나 19 상황 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출장 계획이 취소되어 사전예약한 항공·숙박시설 등을 취소해야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 지급 가능한지?

- 출장자가 항공·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하여야 함.
- 다만, ①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②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③ 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행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에 발생한 예약 취소 수수료는 지원 가능.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I-4-가)

Q&A 62

국외 출장 시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 승급 대상 및 요건은?

• [퍼스트클래스(1등정액) 이용대상자]

- 비즈니스 또는 이코노미 좌석을 구매한 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퍼스트클래스로 좌석 승급

• [비즈니스클래스(중간정액) 이용대상자]

- 이코노미 좌석을 구매한 후, 비즈니스클래스로 좌석 승급

• [이코노미클래스(2등정액) 이용대상자]

- 통상대표단 일원으로 출장가는 경우 또는 항공여행시간이 편도 5시간이상인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좌석으로 승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

Q&A 63

총 4박5일 출장 일정(3.1~3.5)이 다음과 같을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일비 추가지급 방법은?

- 3.1~3.3, 서울 → 도쿄,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
- 3.3~3.5, 도쿄 → 베이징 → 서울,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사용

- 공적 항공마일리지(개인 항공마일리지 합산하여 이용한 경우 포함)를 이용하여 국외 출장을 간 경우에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하되, 추가 지급되는 일비의 총액은 절약된 항공요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 따라서 편도(서울→도쿄)만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출장기간 전체에 대하여 일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음(추가 지급되는 일비 총액의 상한액만 다를 뿐임).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다-5), V-5-가

나. 식비

Q&A 64

국외 출장(3박4일) 중 여행 첫날 기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식비를 여행일수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 국외 출장 시 식비는 원칙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나,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함.
- 따라서, 기내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
-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 생리적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전후 또는 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4-나-1)

Q&A 65

국외여비는 사전에 반드시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운임과 숙박비는 실비정산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출장전 개인별 지급할 수 없음.
- 일비, 식비, 할인정액 숙박비의 경우에는 국외여비 정액지급 신청서(e-사람시스템)에 따라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 다만, 숙박비의 할인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숙박비 지출내역을 정산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I-5-가-2)

Q&A 66

상급자와 동행하여 국외 출장을 갈 경우, 숙박비 또는 식비의 모두 상한액을 모두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 **[상향조정 요건]** 상급자와 동행하여 같은 장소에서 숙식을 해결해야하는 경우로서 하급자의 여비 등급만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숙식이 불가능한 경우
 - * 상급자와 같은 객실의 등급이나 식단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상향조정 범위]** 숙박비 또는 식비에 대하여 상급자와 동행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상향조정
 - * 단, 상향조정된 등급에서 50% 추가 정산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III-1-나-3)

다. 숙박비

Q&A 67

국외 출장 후 실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호텔 숙박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식비에 대한 정산방법은?

- 숙박비에 대해서는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며, 정산할 때에는 숙박비에 포함된 아침식사비 등은 제외하고 정산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Ⅷ-1-가-3)

Q&A 68

독일로 갑, 을, 병 등 3인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갑의 숙박비는 실비상한액을 초과하고 을, 병의 숙박비는 실비상한액 미만인 경우 정산방법은?

-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은 출장국가별, 개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출장건의 출장자 전원의 숙박비 합계금액을 정산기준으로 함.
- 국외여비 지급 등급이 각각 다른 공무원이 함께 국외 출장을 갔을 경우 각각의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실비 상한액의 합계액과 각각의 공무원이 결제한 숙박비 결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숙박비 정산은 출장자 중 대표자를 지정하여 정산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나-5)

Q&A 69

영국(파운드貨)과 같이 국외여비 지급단위인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로 공무여행을 가는 경우, 여비 정산방법은?

- 출장신청 당시의 국제환율을 적용하여 USD 상한액을 여행대상 국가인 영국 파운드화로 환산하고 출장자는 현지화폐로 환산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숙박비 카드 결제. 실비정산은 상한액 내에서 숙박비 영수증에 표기된 현지통화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함.
- 이때 국제환율 적용기준은 출장신청 시점에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 발표한 해당국가 환율을 적용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나-2)

Q&A 70

스페인으로 2박 3일간 출장을 갈 때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았는데 현지에서 숙박비가 부족한 경우, 실비 상한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 국외 숙박비 할인정액제는 국외여비 항목 간에 상호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숙박비 실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할인된 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숙박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I-5-라-2)

Q&A 71

2명이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국외 출장을 갈 때 1명은 숙박비 실비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비정산하고, 다른 1명은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또는 프랑스에서는 실비상한액을 적용하고 스페인에서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동일한 출장건에 대하여 실비 상한액과 할인정액을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실비 상한액 또는 할인정액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지급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I-5-라-2)-마)

Q&A 72

국외 숙박비 정산 신청 기한은?

-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 신청을 해야 함.
- 국제카드사 등으로부터 카드결제정보가 기한 내에 통보되지 않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정산 신청 가능.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I-5-나-4)

Q&A 73

부득이하게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 출장을 간 경우, 국외 숙박비 지급 방법은?

-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 출장을 간 경우라도,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취지에 따라 해당 숙박비는 직접 결제하여야 함.
- 따라서 제3자인 여행사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행사와 계약할 필요가 있음. 다만, 식비, 일비는 개인별로 정액지급하므로 출장자에게 입금한 후 각 출장자가 여행사에 재입금하는 것은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I-5-가-1)

Q&A 74

국외여비 지급 및 정산시, 환율은 현찰 살 때과 현찰 팔 때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원화환율은 금융기관에서 미국 달러화(\$)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에 적용하는 환율(현찰 매도율/현금으로 구입할 때)을 기준으로 함.
- 또한, 환율적용 시점은 국외 출장을 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며, 숙박비 결제할 때에는 환산된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결제하고, 정산시에는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적용한 환율에 따라 산정된 카드사 청구금액을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나-2)-나)-(4), Ⅱ-5-다-3)-가)-(1)-(가)

라. 준비금

Q&A 75

1개월전 '말레이시아'로의 국외 출장 시에 준비금을 지급받았는데, '인도네시아'로의 국외 출장 시 다시 준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출장 시마다 계급·여행일수에 관계없이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에 대해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6-가

Q&A 76

여행자보험료도 국외 출장 시 준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여행자 보험료(보험가입비)는 준비금 항목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준비금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국외여비 정산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을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함. 다만, 'e-사람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6-나

Q&A 77

지방에 근무하는 관계로 직접 서울 소재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준비금이 실비로 지급됨.
-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도 포함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6-나

4. 근무지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가. 부임여비

○ 지급 대상

-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게 된 공무원, 신규채용 공무원
(근무지 외 지역 거주자에 한함)

○ 지급 항목

- 다만, 동일 시·군내의 부임(청사이전 포함) 또는 기타 사유로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음(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외국으로 부임시))

○ 지급 기관

- 부임의 경우, 新근무기관(협의시 舊근무기관 가능)에서 지급, 청사이전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지급

Q&A 78

대전 소재 A기관장이 인사발령 신고를 위해 서울로 출장(금요일)을 온 후 다음 월요일자로 부산 소재 B기관장으로 부임(서울자택→부산)한 경우, 출장여비 및 부임여비 지급 방법은?

- **[출장여비]** ‘대전→서울’ 로의 금요일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운임(대전-서울), 일비, 식비에 대해서는 대전 소재 A기관이 지급함.
- **[부임여비]** ‘서울→부산’ 로의 월요일 부임으로 인해 발생한 운임, 일비, 식비는 대구 소재 B기관(사전 협의시 A기관 지급 가능)이 지급함. 다만, 부임여비는 전임지와 신근무지간 이동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운임은 ‘서울-부산’ 가 아니라 ‘대전-부산’ 간 이동을 기준으로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I-1

Q&A 79

서울 소재 기관에 신규채용된 「갑」(서울 거주)와 「을」(부산 거주)에 대해 부임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신규채용자에 대한 부임여비는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바, A에 대해서는 지급불가, B에 대해서는 운임, 일비, 식비 지급이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I-1-마

Q&A 80

당초 서울의 A기관에서 대전 소재 B기관으로 발령이 난 후 다시 대전 소재 C기관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부임여비 지급방법 및 지급기관은?

- A→B로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운임, 식비 등을 신청(2주일내 정산 신청)한 경우에는 B기관이 부임여비를 지급함.
- B→C로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동일 근무지역내에서의 인사발령이므로 C기관은 부임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 다만, 2주일 이내에 A→B→C로 연속적으로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사실상임 여비 신청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A→C기관의 부임으로 보아, C기관에서 부임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I-4-나, VI-1-라

나. 국내 이전비

○ 지급 대상

- 근무지 외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게 된 공무원, 신규채용 공무원(근무지 외 지역 거주자에 한함)

○ 이주 및 신청기한

- 사유발생 후 1년내(신임지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6개월내) 이사, 이사 후 6개월내 신청
- 단, 부임의 명, 청사이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내 이사의무 유예 가능
- * 육아휴직 및 질병휴직 기간은 국내 이전비 지급 신청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
- * '16년 이후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청사이전일 다음날부터 3년간 유예 휴직 등으로 인해 이전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 유예

○ 지급기관: 신근무기관에서 지급, 협의시 구근무기관에서 지급가능

○ 지급기준

지급기준	지급액
5톤 이하	실비 전액,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5톤 초과	5톤까지는 전액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를 지급하고, 7.5톤을 상한으로 초과분(최대 2.5톤)까지는 실비(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 지급

○ 제출서류: 이사화물 운송명세 및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관사거주 확인서 등)

Q&A 81

서울시 소재 'A기관에서 B기관'으로의 인사발령을 계기로, 종전 거주지(또는 주민등록지)인 원주시에서 서울시로 이사한 경우,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국내 이전비 지급은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를 대상으로 함.
- 따라서 사례와 같이, 동일 지역에 소재한 기관으로 인사발령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I-2-나-1)-가)

Q&A 82

전주의 A기관에서 춘천의 B기관으로 인사발령된 경우, 가정형편(배우자 직장, 자녀교육 등)상 실제 이사는 서울로 하고, 인사발령 후에는 춘천 소재 관사, 하숙집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서울로의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근무지 외 지역으로의 근무지 변경에 따라 신임지로 이전한 경우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경제사정, 자녀교육, 배우자직장 등의 이유로 신임지 이외의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 다만,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에는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보아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음.
- 사례의 경우, 통근시간 단축 여부를 떠나 실제 거주지(춘천)와 이전지(서울)가 불일치하여 통근을 요건으로 하는 이전비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만일 실제 서울-춘천간 통근(전철 이용)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전주-춘천의 통근시간보다, 서울-춘천의 통근시간이 더 짧으므로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I-2-나-1)-라)

Q&A 83

공무원 「을」이 강원도 정선에서 영월로 전보되었으나 태백시로 이전하여 영월로 통근하는 경우,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종전의 정선에서 영월간 통근시간(1시간20분)에 비해, 현재 태백에서 영월간 통근시간(1시간30분)이 유사하거나 더 먼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I-2-나-1)-라)

Q&A 84

공무원「갑」이 총 5톤의 이사화물을 광주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150만원과 사다리차 비용 20만원이 소요되었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

- 이사화물이 5톤 이하이므로 실비의 100%(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를 지급함.
- 따라서 사례의 경우, 170만원 전액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I-2-다

Q&A 85

공무원「을」이 7.5톤 규모의 이사화물을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사하면서 총 150만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 없음)

- 이사화물 5톤까지는 100% 실비지급, 5톤초과 7.5톤까지의 초과분(최대2.5톤)에 대해서는 해당 실비의 50%를 지급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출함.
- 5톤까지 지급액 : 100만원 = $(150\text{만원} \div 7.5\text{톤}) \times 5\text{톤} \times 100\%$
- 초과 이사화물 지급액(추가 2.5톤) : 25만원 = $(150\text{만원} \div 7.5\text{톤}) \times 2.5\text{톤} \times 50\%$
- 총 지급액 : 125만원 = 100만원 + 25만원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I-2-다

Q&A 86

공무원「병」이 10톤 규모의 이사화물을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사하면서 총 200만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전비는?(운송비, 인건비,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기타 소요비용 없음)

- 이사화물 5톤까지는 100% 실비지급, 5톤초과 7.5톤까지의 초과분(최대2.5톤)에 대해서는 해당 실비의 50%를 지급하므로 다음과 같이 산출함.
- 5톤까지 지급액 : 100만원 = $(200\text{만원} \div 10\text{톤}) \times 5\text{톤} \times 100\%$
- 초과 이사화물 지급액(추가 2.5톤) : 25만원 = $(200\text{만원} \div 10\text{톤}) \times 2.5\text{톤} \times 50\%$
- 총 지급액 : 125만원 = 100만원 + 25만원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I-2-다

Q&A 87

부산 소재 A기관에서 대구 소재 B기관으로의 인사발령을 계기로 2021년 1월 31일 대구로 이사를 한 후, 2021년 3월 1일자로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2021년 11월 30일에 복직한 경우, 이전비 지급신청기한은?

- 이전비는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지급신청을 해야함.
- 다만, 육아휴직·질병휴직 기간은 이전비 지급신청기간(6개월)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사례의 경우, 다음 연도(2022년) 4월 30일까지 이전비 지급신청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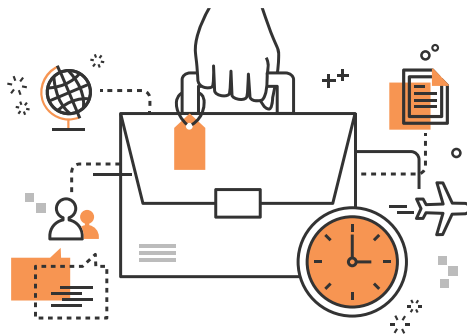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I-2-라-1)

Q&A 88

세종에서 제주시로 인사발령이 나서 제주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전비와 더불어 자가용 승용차 탁송비도 여비 신청이 가능한지?

- 이전비 지급대상 요건(거주지 변경 확인, 신청기한)에 해당된다면 아래와 같은 여비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임.
- 이전비 : '이사화물'에 대해 이전비 지급 가능. 다만 '차량 탁송'은 옵션 사항으로 보아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본인차량에 이사화물을 싣고 이사할 경우, 차량을 이사화물로 보아 이전비 지급은 가능할 것임.
- 부임여비 : 육지에서 본인 차량을 타고 직접 부인지로 갈 경우, 선박 승선 운임·차량 도선료 지급이 가능할 것임.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V-2-나-2)



다. 국외 이전비

- **지급 대상** : 본국→외국 또는 외국→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 **신청기한** : 이사 후 6개월내 신청
* 외국의 주거여건 및 임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사의무 기한이 없음
- **지급기관** : 新근무기관에서 지급, 협의시 舊근무기관에서 지급가능
- **지급기준(해상운송 기준)**

지급기준	지급액
15㎡ 이하	실비의 100%
15㎡ 초과(25㎡를 상한으로 함)	실비의 50%

* 단, 예외적으로 항공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300kg 이내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해상운송시 15㎡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거주지 변경 확인 및 이사화물 운송명세 관련 증거서류

Q&A 89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귀국하였으나, 실제 이사일은 6월 1일인 경우, 이전비 지급신청기한은?

- 국내 이전비의 경우, 인사발령 후 1년 이내 이사, 이사한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하나, 국외 이전비의 경우 이사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규정됨.
- 국외 이전시 별도의 이사의무기한을 두지 않은 것은 외국의 주거여건 및 임차여건 등을 고려한 것임.
-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제로 이전한 날인 6월 1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新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I-3-다

Q&A 90

외국으로 단신부임하는 경우, 이사화물을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는지?

- 내륙국가 또는 단신부임하는 경우 이사화물을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음. 다만, 300kg 이내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선박운송으로 15㎡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따라서 각 기관은 복수의 해외이사업체에 대한 가격조사 등을 통하여 상한액(선박을 이용한 15㎡ 국외 이전비 비용 등)을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I-3-나-2)

Q&A 91

공무원「갑」이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부임명령을 받아 15m³ 이사화물을 \$5,000를 지급하고 이전한 경우,「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 이전비는?

- 국외 이전비 지급대상은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임.
- 국외 이전비 지급기준으로 15m³ 이하의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실비 전액을 지급하므로 공무원「갑」에게 이전비 \$5,000를 지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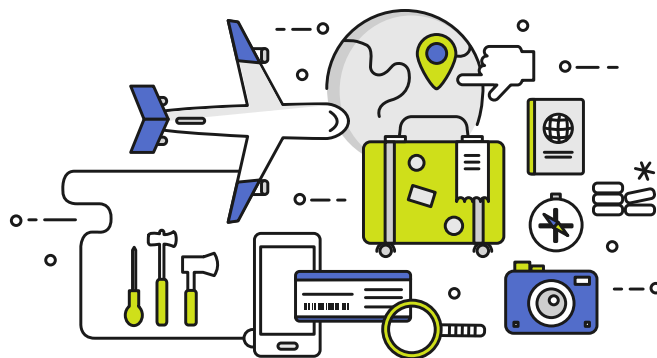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I-3-나-2)

Q&A 92

공무원「을」이 워싱턴에서 베이징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25m³의 이사화물을 \$7,000를 지급하고 이전한 경우,「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 이전비는?

- 공무원 여비규정상 15m³를 넘는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실비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사화물이 25m³를 넘는 경우에는 25m³를 상한으로 함.
- 공무원「을」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는
 - 15m³까지 이전비 : \$4,200 = (\$7,000×25m³)×15
 - 초과화물 이전비 : \$1,400 = (\$7,000×25m³)×10×1/2
 - 총 지급액 : \$5,600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I-3-나-2)



라. 국내 가족여비

- **지급사유** : 본국 국내 이전자로서 가족을 동반하여 이전하거나, 이전 후 가족을 불러오는 공무원
- **지급기준**
 - 운임, 숙박비 :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실비 전액
 - 일비, 식비 :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정액지급분의 2/3(12세 이상) 또는 1/3(12세 미만)을 지급

Q&A 93

서울(전임지)에서 대전(신임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인근 공주시(거주지)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경우, 동반가족에 대해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신청기한]**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가족을 불러와야 하며, 불러온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여비를 신청해야함. 신임지로 이전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전 후 1년 이내에 가족을 불러와야 하며, 불러온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여비를 신청해야함.
- **[가족의 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해당 공무원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지급액]** 가족 1명 마다 운임과 숙박비(실비정산)는 해당 공무원과 동일금액으로, 일비·식비는 동일금액의 2/3(12세 이상) 또는 1/3(12세 미만자)을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I-4

마. 해외 가족여비

- **지급사유** : 영 별표6의2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자
*신임지로 가족동반출국, 외국근무중 가족초청, 교육을 위한 일시귀국, 외국근무중 배우자동반 공무여행, 가족사망으로 인한 일시 가족 1인 대리귀국
- **지급기준**
 - 운임·준비금 :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실비 전액
 - 일비, 숙박비, 식비 : 해당 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정액 지급분의 2/3(12세 이상) 또는 1/3(12세 미만)을 지급

Q&A 94

뉴욕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귀국하면서, 런던에서 유학중인 20세의 자녀를 한국으로 불러올 경우,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영 [별표6의2] 제1호에 따라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신근무지로 동반할 경우에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사례의 경우, 근무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을 귀국시키는 것이므로 영 별표6의2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외 가족여비 지급대상이 아님.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I-5-나-1)

Q&A 95

뉴욕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런던에서 유학하고 있는 20세의 자녀를 근무지로 불러올 경우,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영 [별표6의2] 제2호에 따라 외국 근무중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에는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비록, 한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주재국(미국)으로 불러오는 경우라도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한편, 해당 주재국의 다른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주재지로 불러오는 경우에는 국외 가족여비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I-5-나-2)

Q&A 96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한 경우 등 일정한 조건하의 재외공무원이 가족동반으로 전지(轉地) 휴양 등을 갈 수 있는 횟수 및 여비 지급액은?

- [전지 휴양] 연 1회
- [전지 의료검진] 연 1회
- [저지대 요양] 분기 1회
- [가족에 대한 여비 지급액] 해당 공무원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운임 전액, 다만,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동반하는 자녀에 대한 항공운임은 본인의 등급과 관계없이 2등정액(이코노미)을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VI-5-나-7), 8)

5. 기타

Q&A 97

공무원「갑」이 허위출장으로 8만원의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경우, 환수조치 방법은?

- **[환수금액]** 총 48만원(부당수령액 8만원 + 가산징수금액 40만원)
* 가산징수금액은 부당수령액의 5배 상당액임('21.12.9일 이후 5배 적용. 종전은 2배)
- **[환수방법]**
 - 부당수령액 : 해당 연도에 환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여비로 환수(반납결의),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하는 경우에는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조치
 - 가산징수금액 : 환수시기와 상관없이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조치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Ⅷ-4-나

Q&A 98

외국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출장으로 일시 귀국하였을 경우, 국내에서의 여비 지급 방법은?

- 국내 체류 기간은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국내 출장여비로 지급함.
- 다만, 입국일과 출국일은 출장여정(국내 체류시간 등)을 감안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 Ⅳ

Q&A 99

과장급 공무원(제2호)이 국장급(제1호라목) 직위에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무대리 중인 과장급 공무원의 출장여비는 어느 직급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직급을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해야 함. 사례의 경우, 과장급 공무원(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함.

중앙부처 공무원이 파견명령에 의해 ○○시 보건소로 1개월 파견되었을 경우, 1개월 파견기간을 출장처리하여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 파견은 임용행위로서 파견기간 자체를 출장으로 처리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근무지 외 지역으로 파견된 경우, 파견 인사발령에 따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지급 가능할 것임.
- 또한, 파견받은 기관에서 파견공무원에게 공무상 출장명령을 한 경우, 파견 받은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함.
* 부임여비 · 이전비 · 가족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함. 다만, 원소속 기관과 파견 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할 수도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1-2-나





여비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공무원 여비

100문

100답

...

